

종합감사

- 국고보조사업 및 용역사업 수행실태 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7.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특 허 청 통 보

제 목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관리 미흡
관 계 기 관 한국특허정보원
내 용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용역 수행중인 ‘글로벌 IP정보 개방·유통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 개방 데이터 구축 및 보급 확대 업무(산업재산권 정보제공 등)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원은 「발명진흥법」 제20조의3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으로서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를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특허청고시 제910호)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해당 수수료 징수와 관계된 업무1)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업무범위) 정보화 전문기관은 정보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육성,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함

따라서 정보원은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입금에 대하여 집행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입-집행에 따른 누적 잉여금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 수수료 수입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보원은 매년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입금의 집행 항목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수입-집행 내역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단일 연도에 한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 수입과 지출에 따른 연도별 누적 잉여금의 이력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입금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

[표]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수입(A)	250,236,290	243,870,422	254,714,913	419,382,378	343,375,342	307,815,942	1,819,395,287
지출(B)	273,451,032	288,898,816	181,877,879	387,161,010	281,314,327	288,813,144	1,701,516,208
잔액(A-B)	-23,214,742	-45,028,394	72,837,034	32,221,368	62,061,015	19,002,798	117,879,079

조치할 사항 한국특허정보원장은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익금이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부합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수입금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청

개 선 요 구

제 목 선형기술조사업무 처리 프로세스 개선

관 련 기 관 특허정보진흥센터

내 용

특허정보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는 「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및 「선형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특허청에서 수행하는 특허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형기술조사, 특허분류 부여 등의 선형기술조사사업을 등록된 선형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청 고시 제 2017-17호)으로서 수행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조사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허법, 조사기법, 심사지침서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진흥센터 자체적으로도 「선형기술조사지침」 제 6장에 따라 조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특허법, 조사기법, 심사지침서 교육, 전문기술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센터는 선형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특허심사와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심사 업무의 일부인 선형기술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사관의 심사업무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하고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맞도록 선형기술조사업무를 수행·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심사의 순위) 제1항에 따르면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는 심사의 청구순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특허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우선심사인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등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우선심사신청료를 납부한 건에 대하여는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에는 우선심사신청 출원에 대하여 우선 심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또는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에 의하여 우선심사하는 출원의 경우에는 4개월) 또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결과가 심사관에게 이송된 날부터 1개월 중 늦은 날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도록 규정²⁾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우선심사신청 출원에 대하여 신속한 심사결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진흥센터는 특허청으로부터 의뢰되는 물량을 의뢰되는 일자 기준으로 ‘일반건’과 ‘우선심사건’으로 구분하고, ‘일반건’은 통상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건’은 통상 3주 이내에 납품이 되도록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10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관과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하여 납품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진흥센터에서 ‘일반건’과 구분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우선심사건’은 「특허법」 제61조에 의한 우선심사신청 출원과는 다른 개념으로, 특허청으로부터 조기납품을 요구받은 건에 대해서 ‘우선심사’로 표시하여

2)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4장 우선심사 중 ‘우선심사결정 후 처리기간(7419p)’에 규정

구분하고 있었고, 조사물량을 관리하는 내부 전산망에서는 「특허법」 제61조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여부와 관련된 정보는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이 경우 우선심사신청 출원임에도 조사기관으로부터 납품이 일반건과 동일하게³⁾ 이루어져 심사착수가 늦어지는 등 출원인에게 신속한 심사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선심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심사처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특허정보진흥센터장은 특허청에서 의뢰되는 조사물량에 대하여 「특허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우선심사신청 출원을 일반출원과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물량을 관리하고, 일반출원에 우선하여 납품을 하는 등 출원인에게 신속한 심사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선심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허청에서 의뢰되는 일자에 기준하여 구분하면, 우선심사신청 출원임에도 의뢰일에 의하여 '일반건'처럼 2개월 이내에 납품될 수 있으며, 일반 출원임에도 '우선건'과 같이 3주 이내에 조기 납품될 가능성이 있음

특 허 청

통보(모범사례)

제 목 중소·스타트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및 판로확대 적극 기여

관 계 기 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모 범 대 상 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영지원실 행정원 이○○

내 용

위 사람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연구원의 계약업무를 담당하였다.

연구원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달리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목적기관⁴⁾으로, 국내외 지식재산 분야의 선도적 연구수행, 지식 재산 동향의 수집 및 분석,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구원의 발주계약 대부분이 지식재산 분야의 연구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등 전문성·기술성 등을 요하고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⁵⁾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연구목적기관’으로 ‘19년 지정

5)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가격점수 20점, 기술평가점수 80점으로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

한편 위 사람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기술평가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관련 업무실적’, ‘과업수행능력의 적정성’의 평가항목 중 일부 평가요소가 과업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더라도 규모가 작거나 신생기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 용역수행 결과물의 품질과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창업기업에게 진입장벽을 낮추고 업무수행 능력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술평가항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후 위 사람은 국가기관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달청 지침 등을 통하여 중소·스타트업 및 사회적경제기업⁶⁾에게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보다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연구원의 업무환경 및 계약여건에 적합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2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안)’ 및 ‘창업·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안)’을 수립하고, ① ‘재정 건전성’ 평가항목에 대하여 업체의 연혁, 규모 등의 평가요소가 있음에도 5년 이내 중소·스타트업 기업은 만점을 부여하고, ② 사업수행 안전성 평가를 위해 관련 업무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중소·스타트업 기업은 3년이 아닌 7년간의 실적으로 실적인정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③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관련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만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평가항목을 개선하였다.

6)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구분하며 대표적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해당

[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한 기술평가항목 개선사항

연번	평가항목	평가요소	개선사항
1	재정 건전성	· 업체 연혁 · 인력구성 현황 · 재무구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5년 이내 창업·스타트업기업의 경우 만점을 부여 ※단, 수주를 위한 신규 창업 자회사 제외
2			· 기술혁신 인증기관, 사회적 경제기업 증명서(여성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사회적(협동조합)기업, 자활용사춘 복지공장 등)제출 업체는 가점 1점 추가 부여 ※단, 가점은 만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여
3	관련 업무실적	· 최근 3년간 계약체결 실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7년 이내 창업·스타트업기업의 경우 실적인정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 ※단, 수주를 위한 신규 창업 자회사 제외

이를 통해 연구원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발주한 전체 일반 공개경쟁계약 총 6건에 대하여 중소·스타트업기업에게 가점 및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가점 적용을 실시하였고, 이 중 5건을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체결⁷⁾하는 등 중소·스타트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경쟁 기회를 확대를 통한 공공조달시장 진출 및 판로확대에 적극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 및 해당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9.1월부터 2019.5월까지 창업·스타트업 기업의 연구원 발주계약 입찰참가 사례는 없음